

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2]

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(제34조 관련)

명칭	관할구역
원 주 지 방 환 경 청	강원특별자치도, 충청북도 충주시·제천시·괴산군·음성군·단양군 [하천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한강수계의 일부(한탄강과 그 지류를 말한다) 및 낙동강수계는 제외하고, 경기도 내 한강수계의 일부(북한강과 그 지류, 섬강을 포함하는 섬강 합류점 상류의 한강 본류와 그 지류를 말한다), 충청북도 내 한강수계의 일부(섬강을 포함하는 섬강 합류점 상류의 한강 본류와 그 지류를 말한다) 및 경상북도 내 한강수계를 포함한다. 다만, 하천관리과의 업무에 대해서는 국가하천 한강 중 섬강 합류점 상류구간을 관할한다]
대 구 지 방 환 경 청	대구광역시, 경상북도 [하천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·경상북도 내 낙동강수계 및 경상북도 내 한강수계와 금강수계는 제외한다. 다만, 하천관리과의 업무에 대해서는 국가하천 낙동강 중 대구광역시·경상북도 구간을 관할한다]
전 북 지 방 환 경 청	전북특별자치도 (하천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낙동강수계와 금강수계 및 섬진강수계는 제외한다)